

Local Studies 논문작성지침

2024년 9월 4일 제정

1. 논문의 구성 및 분량

- ① Local Studies에 실리는 논문은 표지, 본문, 참고문헌 목록으로 구성되며, 필요할 경우 부록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② 원고의 인쇄분량이 10쪽을 초과하는 경우 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논문 첫 페이지인 표지에는 논문제목(국문, 영문), 저자 성명, 소속 및 직위(국문, 영문),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, 주제어(국문, 영문)를 수록한다.
- ④ 투고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투고시 주저자(제1저자)와 공동저자, 교신저자를 구분하여야 한다. 저자에 관한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간주한다. 심사용 원본파일에는 저자명과 소속을 반드시 지워서 제출해야 한다.
- ⑤ 초록은 국영문 각 10줄 내외(400자 내외, 200단어 내외)의 분량으로 하며, 연구의 배경·목적·필요성, 연구방법, 연구결과가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한다.
- ⑥ 특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항에 대한 내용은 첫 쪽 아래 부분에 각주로 기재한다.
- ⑦ 논문 본문은 서론, 본론, 결론, 각주 등, 논문의 일반적 구성양식에 맞춰 장, 절, 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 - 장 : 1.
 - 절 : 1.1.
 - 1.1.1
 - 항 : 1) → (1)
- ⑧ 참고문헌은 일련번호, 저자, 발행년도, 문헌제목, 발행지, 발행처 등의 순으로 표기하며 그 세부형식은 본 지침의 '주석, 인용문헌, 참고문헌의 형식'을 따른다.
- ⑨ 투고논문에는 내용에 필요한 표, 그림, 다이어그램, 도면, 조감도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.

2. 사용언어

- ① 투고논문의 본문은 국문/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기타 외국어를 병용한다.
- ②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'한글맞춤법(1989)' 및 '표준어규정(1989)'에 따른다.
- ③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한글로 표시할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. 외래어는 교과부의 '외래어표기법(1986)' 및 '외래어표기용례집(1986)'을 따라 표기한다.
- ④ 문헌명과 약어는 원어 그대로 쓴다.

- ⑤ 영문초록에서 약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곳에 원래의 용어와 약어를 표기한 후, 이하 내용에서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⑥ 본문 중의 로마자를 사용하는 외래어의 표기는 모두 소문자로 한다. 단, 고유명사의 첫 자, 대문자를 쓰는 약어, 교과부 과학기술용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⑦ 중국과 일본의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로 통일한다.
 - 한자로 표기하고 처음 나올 때에 괄호 안에 발음을 병기한다.
 - 일본어의 경우만 발음을 병기한다.
 - 한자로만 표기한다.

3. 원고의 서식

원고작성

- ① 모든 논문은 저자명과 소속 등을 삭제한 후 PDF로 제출한다. 작성에 있어서 국문논문의 경우 아래한글(HWP)을 사용하고 영문논문은 필요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(MS-Word) 형식으로 작성한다.
- ② 논문샘플 파일을 참고하여 일치되도록 작성한다.
- ③ 심사완료 후 게재확정이 된 논문은 논문샘플 파일을 활용하여 아래한글(HWP) 형식으로 제출한다.

표, 그림, 주석, 인용

- ① 원고에 포함되는 표는 원본에 직접 삽입한다.
- ② 원고에 포함되는 사진, 도면, 지도, 그래프 등의 그림(figure)은 원본에 직접 삽입하고 본문에 게재된 순서에 따라 별도 그림파일(JPEG, PNG)로 저장하여 제출한다.
- ③ 원고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해상도가 300 pixels/inch 이상이어야 한다.
- ④ 모든 주기는 각주로 한다.
- ⑤ 본문 중 직접적인 인용문이 있을 때에는 인용부호(“ ”)로 표시하고 그 출전을 밝힌다.
- ⑥ 만약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“:”로 구분하고, 동일저자의 복수 인용문일 경우는 (가), (나), (다)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표기한다.

참고문헌

- ① 참고문헌은 본문 맨 뒤에 구성한다.
- ② 참고문헌은 한국문헌, 동양문헌, 서양문헌, 인터넷URL, 기타(법령, 신문기사 등) 순으로 작성하며, 저자명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.
- ③ 한국문헌을 제외한 동양문헌은 한국문헌의 표기법을 준용한다.
- ④ 단행본
 (한국문헌) 저자명 발행연도, 『도서명』(판차), 출판사, 출판지.
 (서양문헌) Author Year, *Book Title* (Edition), Publisher, Place of publication.

⑤ 정기간행물

(한국문헌) 저자명 발행년도, “논문명”, 『정기간행물명』, 권수, 호수, 쪽.

(서양문헌) Author Year, ‘Title’, *Name of Journal*, volume, number, pages.